

시간당 25kg 미만 소각로 신설 금지

오는 7월부터 폐기물소각용량이 시간당 25kg 미만인 소형소각로의 설치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소형소각로가 맹독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과 먼지 등을 과다 배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각용량이 시간당 100kg미만인 소각로도 대형소각로와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배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경우 배출부과금을 물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현재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에 걸쳐 전국적으로 1만3천 개가 설치돼 전체 소각량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100 kg미만 소각로는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25kg미만의 소형소각로는 아예 신설이 금지될 뿐 아니라 현재 설치돼 있는 소각로의 경우 내구연한인 5년이 차면 반드시 뜯어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형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먼지의 농도가 대기오염 배출기준의 적용을 받는 소각로에 비해 50배와 20배에 각각 이르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이런 관리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작년 환경분쟁 91%가 소음·진동 관련

아파트나 도로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급증, 작년의 경우 이 종류의 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91%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9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작년말까지 접수된 분쟁사례 252건 가운데 소음·진동분야가 73%인 183건이었고 대기분야는 14%, 수질은 10%, 해양분야는 3%로 분류됐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환경분쟁 62건중 91%인 56건이 소음·진동분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많은 것은 대기 수질보다 오염원 입증방법이 쉽고 금전적 보상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분쟁 조정위는 분석했다.

조정신청사례를 피해내용별로 보면 252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과 정신적 피해가 53%로 가장 많고 축산물 피해 19%, 농산물 피해는 13%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돼 조정을 시작한 92년의 승복률은 25%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87%로 증가했다.

그러나 조정신청 주장이 사회통념상 무리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해 기각한 사례도 지난해 경우 조정·재정의회를 거친 35건의 23%인 8건에 달했다.

스모그형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화학성분의 스모그형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중 총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내년말 삭제하고 먼지에 대한 관리를 선진국과 같이 미세먼지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확정, 먼지측정기를 모두 미세먼지 측정기로 교체하겠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환경부 고윤화(高允和) 대기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광화학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고 미세먼지에 의한 시정장애 등 체감오염도가 상승,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쉽게 들어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유해가스나 비소, 크롬 등 중금속 입자와도 쉽게 흡착되고 대기중에 오래 체류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도가 크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매연, 석유나 화학물질의 제조, 활용과정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등이 대기중에 응축돼 나타나는 스모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흙먼지나 꽃가루 등 큰 입자까지 포함하는 총먼지와는 다르다.

현재 전국에 총먼지 측정기는 70개, 미세먼지 측정기는 28개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올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설치된 41개 총먼지측정기를 미세 먼지측정기로 교체하고 수원, 성남, 안양 등 중소도시의 29개 측정기도 내년에 미세먼지측정기로 바꾸기로 했다.

병원 적출물 등 특별관리 의료기관 비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도 앞으로는 지정폐기물로 특별관리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등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 포함시켜 불법·부적정 처리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공포한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 적출물 등을 허가없이 관리하면 벌금이 종전의 3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10배로 늘어나고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1년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로 돼 있어 환경부가 시급한 사안의 시행시기를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늦춰 잡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 폐기물에는 인체조직물, 1회용 주사기와 탈지면 등 폐합성수지류, 실험동물 사체, 1회용 기저귀, 석고붕대, 주사약병, 혈액팩 등이 포함되며 대상업체는 3만여개의 병·의원과 보건소, 동물병원, 제약회사와 신약연구소 등이다.

환경부 심재곤(沈在坤) 폐기물자원국장은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따라 병원 적출물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온 것으로 안다”면서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위생처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수입자유화 혼경개선에 긍정적”

축산물 수입자유화가 상수원 등 환경개선에 긍정적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서경대 한택환(韓宅煥)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소비폐탄 국제 전문가회의’에서 “축산폐수 처리문제는 상수원 등의 수질개선에서 최대 과제 중 하나이므로 축산업의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소득증대와 서구적 생활양식의 전파로 쌀보다 유통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축산업의 팽창은 축산폐수로 인한 심각한 수질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환경면에서 국내 축산업의 성장보다는 축산물 수입확대가 더 낫다고 시사했다.

그는 소득의 증대와 자가용의 증가로 여가소비폐탄이 변화하면서 팔당 등 상수원 보호구역조차 수도권 주민의 행락지가 돼 기존의 농지까지 개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태완(金泰完) 박사는 ‘한국에서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추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소득층은 에너지와 사치품의 과소비로 인

해 환경파괴적인 소비를 하고 빈곤계층은 생존을 위해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박사는 최근의 경제난 영향으로 과소비 자체, 필수품 재사용 증가에 따라 자원절약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 긍정적인 환경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돗물 300t 이상 사용 건물 중수도 의무화

하루 300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내년부터 하수를 처리, 음료수 외에 생활용수 등 허드렛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형 공공건축물 등에 권장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입법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중수도 의무화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에 대한 검토용역을 맡긴 결과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300t 이상인 건물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의무화대상이 300t 이상으로 결정되면 전국 시·도의 주요 공공시설은 대부분 해당된다.

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동시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서도 예가 적은 중수도 설치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은 갈수기의 수자원 고갈, 인구밀도 급증 등으로 해마다 물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도 설치가 ‘권장 사항’인 현재 전국 60여곳에서

하루 30여만t 규모의 중수도 시설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356개 하수·폐기물 처리장 등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지난 1월 28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김상하(金相賈) 대한 상의회장 등 기업체 사장단 26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28개 하수처리장에 불과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관리를 내년까지 356개의 전체 하수·폐기물시설로 확대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시설 등의 민간위탁과 민자유치 등 민영화 확대를 위해 작년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지침을 시달렸고 재정경제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했다고 최장관은 설명했다.

최장관은 기업의 참여를 돋기 위해 환경시설 민영화 투자 수익률도 국제수준인 18~20%로 확대하고 현재의 설치·기부후 운영 방식을 설치·운영후 기부 방식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와 관련, 최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경제부문을 뛰어넘어 국가 안보에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기업 스스로 생존을 위해 설비의 열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형 공정 개선,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 자원절약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